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3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85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서부산소재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피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8. 28.
판 결 선 고	2015.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토지취득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3

1) 구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라 한다)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일원에 있는 서부산유통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위 지구 내 유통시설용지 중 전문상가용지의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2) LH는 2008. 5. 23. 유통시설용지에 대한 2차 분양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순위 및 분양용지에 대한 처분제한을 공고하였다.

◦ 분양순위 1순위 -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의 입주추천을 받은 자 2순위 - 서부산유통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이전 또는 이전할 업체로 구성된 조합 3순위 - 부산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 4순위 - 일반수요자 ◦ 분양용지에 대한 처분제한 사항 분양받은 용지는 지정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대금완납 전 명의변경은 금지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다.

3) 이에 부산지역 등 18개 중소물류업체들은 위 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아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원고 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2008. 2. 22.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승인을 받고, 2008. 3. 6. 법인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 조합을 설립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08. 6. 26. LH로부터 위 분양공고상 2순위로 부산 강서구 대저2동 3136-2 대 27,89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6,832,820,000원(3년간 6회 분납조건)으로 정하여 분양받고, 그 무렵부터 분양대금 분납금을 지급하다가 최종적으로 2011. 3. 31. 분납금을 완납하여, 2012. 3.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3

나. 취득세의 면제 및 면제받은 취득세의 자진납부

1) 원고는 분양대금의 분납금을 납부할 때마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0조 제5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의 취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분납대금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원고는 위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을 즈음 주무관청인 피고에게 원고의 당초 설립 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개별 조합원들에게 이전할 경우 관련 법령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LH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서 바로 조합원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면 면제받은 취득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라 추징대상이라고 안내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의 감독관청인 부산광역시장과 간담회를 하는 등 계속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입장이 변하지 않자, 2012. 11. 15.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들에게 양도하고 2012. 11. 20. 조합원들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3. 1. 16. 피고에게 면제받은 취득세 등 759,101,170원을 납부하겠다는 자진신고를 한 후 2013. 3. 22.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다. 취득세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1)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면제대상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4. 29. 피고에게 위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0.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3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물류사업용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

2) 면제받은 취득세에 대한 일반적 추징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는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면제요건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이라는 요건을 부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는 같은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설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94조 제1호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물류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4) 또한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분양받은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이전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가 정하는 '매각 ·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3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감면요건 충족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201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여 물류사업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L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제 물류사업 영위의 주체가 원고인지 개별 조합원인지를 불문하고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소정의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일단 위 조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2012.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직접 사용'을 취득세 면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취득세에 대한 일반적 추징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를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구 행정안전부는 2011. 2. 8. 아래 [지침1]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운영지침을 시달하였고, 부산광역시는 같은 날 위 운영지침을 피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3

등에게 통보한 사실, 이후 구 행정안전부는 2013. 3. 21. 아래 [지침2]와 같은 내용으로 위 운영지침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침을 다시 시달하였고, 부산광역시는 2013. 3. 25. 이를 피고 등에게 통보한 사실은 갑 제7, 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지침1] 구 행정안전부의 2011. 2. 8.자 운영지침

◦ **쟁점사항** 구 지방세법에서는 감면규정에 개별적으로 추징요건이 단서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분법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별적으로 감면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4를 준용하여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및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과 감면대상 물건을 '직접 사용'토록 규정한 조항만 한정적으로 해당된다 할 것임

[지침2] 구 행정안전부의 2013. 3. 21.자 운영지침

◦ **적용범위 관련 우리부 운영지침 내용** 2011. 2. 8. 신설 추징규정의 운영지침 통보 : 감면조문에 개별추징규정이 없더라도 '직접사용'이 규정되어 있으면 신설된 추징규정(제94조)을 적용하되, 감면조문에 '직접사용'이 없는 경우 신설된 추징규정 적용 제외 ◦ **지침내용의 문제점 및 지침내용 조정** 문제점 : 운영지침에서 적용범위를 '직접사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입법취지에 반해 적용대상 누락 발생 변경내용 : '직접사용'이 없더라도 종전에 개별추징규정이 있었던 조문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조문은 일반적 추징규정(제94조) 적용대상으로 지침 조정

다) 한편,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3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등 참조).

라)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행정안전부의 2011. 2. 8.자 운영지침과 2013. 3. 21. 자 운영지침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지침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위 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고, 위 2011. 2. 8.자 운영지침이 되풀이 시행되는 등 실제 행정관행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의 상급행정기관인 부산광역시는 원고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합명의로 보존등기 후 조합원에 분할등기할 경우 조합은 위 법 제94에 따라 추징대상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회신한 점, ③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는 구 지방세법상 개별감면조항의 추징규정을 일반화한 규정으로, 2011. 1. 1. 분법되기 이전에 구 지방세법상 개별추징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행정안전부의 2011. 2. 8.자 운영지침은 그 적용대상을 '직접 사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추징대상이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13. 3. 21. 자 운영지침을 통하여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그 해석을 변경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3

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일반적 추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 따른 추징요건 해당 여부

면제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3. 14. 대통령령 제25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바(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이 사건의 경우 최종 연부금 지급일}인 2011. 3. 31.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2. 9. 12.에야 물류시설을 위한 건축공사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그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부산광역시와 피고의 추징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산광역시장과 간담회를 하는 등의 항변 과정에서 1년이 경과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3

이후인 2011. 7. 31. LH의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준공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없었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준공일을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인 2012. 7.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위와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5. 3.경 건축사사무소와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27.경 위 토지에 가설울타리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건축행위에 나아감이 없이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가설울타리는 공사장과 외부를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타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 따른 추징요건 해당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물류시설을 위한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2012. 9. 12.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11. 20. 조합원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조합원들 스스로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수 없었기에 조합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았고 이후 원고는 2012. 11. 15. 조합원들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3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을 조합원들에게 이전하여 준 점,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③ 그런데 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의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해서만 특례규정이 존재할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해당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조합인 원고가 그 조합원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경우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서 정한 '매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 인진섭

판사 김두홍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3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3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3. 14. 대통령령 제25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5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⑧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23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끝>